

[총평]

이번 순경채용시험 경찰학 개론은 전체적으로 수준은 중·상 정도이며, 박스형문제는 총 11문제가 출제되었고, 총론에서 10문제, 각론에서 10문제가 출제되었으며, 총론 10문제 중 경찰법학에 해당하는 부분이 8문제가 출제되어 경찰법학에 대한 꼼꼼한 학습이 필요하겠습니다. 각론에서는 수사부분이 출제되어 경찰청 내부에서 수사권 조정 및 독립에 대한 높은 관심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경위, 경감승진문제, 경찰간부시험에서 출제되었던 문제들이 다수 출제되어 다시한번 기출문제의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1. ④

[해설]

④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은 서면이 주장한 이론으로 사회전체가 경찰의 부패를 목인하거나 조장할 때 경찰관은 자연스럽게 부패행위를 하게 되며, ~ 니더호퍼, 로버, 바커 는 구조원인가설을 주장하였습니다.

2. ①

[해설]

② 일본각의의 결정에 따라 김홍집 내각은 경찰을 법무아문에 창설할 것을 결의하였으나, 곧바로 내부아문으로 소속을 변경하여 창설하였다.
③ 경무청관제직장에 의해 당시의 좌우포도청을 합하여 경무청을 신설하였다.
④ 일본의 행정경찰규칙과 위경죄즉결례를 혼합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작용법인 행정경찰장정을 제정하였다.

3. ①

[해설]

① 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위원으로 하고,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위원장은 비상임위원 중 호선하며,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한다.

4. ③

[해설]

③ 권한의 위임은 상급관청의 권한의 일부를 하부관청에 이전하는 효력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법령상의 근거가 필요하며, 경찰공무원법 제6조 등 개별법 및 정부조직법 제6조,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 제4조 등 일반법에 그 근거규정이 있다.

5. ③

[해설]

① 계급정년은 치안감 4년, 경무관 6년, 총경 11년, 경정 14년(경찰공무원법 제24조)
㉠ 수사, 정보, 외사, 보안 등 특수부분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사람은 총경 및 경정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경찰공무원법 제24조)
㉡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전시, 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는 2년의 범위에서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경찰공무원법 제24조)

6. ④

[해설]

④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4촌 이내의 친족은 제외한다)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

7. ③

[해설]

③ 경찰관서의 장은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국가기관 또는 공사단체등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소속경찰관으로 하여금 현장에 출장하여 당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협조를 얻어 그 사실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8. ④

[해설]

④ 무기라 함은 인명 또는 신체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소총·도검 등을 말한다. 경찰봉은 경찰장구에 해당하고, 최루탄은 분사기·최루탄 등에 해당한다.
[경찰장비의 종류]

경찰 장비 종류	① 경찰장구: 수갑·포승(포승)·호송용포승·경찰봉·호신용경봉·전자충격기·방패 및 전자방패 ② 무기: 권총·소총·기관총(기관단총을 포함)·산탄총·유탄발사기·박격포·3인치포·함포·크레모아·수류탄·폭약류 및 도검 ③ 분사기·최루탄등: 근접분사기·가스분사기·가스발사총(고무탄 발사검용을 포함) 및 최루탄(그 발사장치를 포함) ④ 기타장비: 가스차·살수차·특수진압차·물포·석궁·다목적발사기 및 도주차량차단장비(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	---

9. ④

[해설]

- ㉠ Green Notice(녹색수배서)- 상습국제범죄자 수배서로, 상습 국제범죄자나 재범 우려가 있는 국제범죄자의 동향을 파악하여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발행한다.
 ㉡ Black Notice(흑색수배서)- 변사자 수배서로, 신원불상 사망자 또는 가명사용 사망자 신원파악 목적으로 발행한다.

10. ①

[해설]

-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 하여야 하고 10일 이내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동법 제11조)
 ㉡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모은 청구인이 부담하나 정보사용의 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동법 제17조)
 ㉢ 정보공개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내지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동법 제12조)
 ㉣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동법 시행령 제11조)

11. ①

[해설]

- ① 영역성의 강화- 사적 공간에 대한 경계를 표시함으로써 주민들의 책임의식과 소유의식을 증대함으로써 사적공간에 대한 관리권과 권리를 강화시키고, 외부인들에게는 침입에 대한 불법사실을 인식시켜 범죄기회를 차단하는 원리이다.

12. ①

[해설]

응급조치의 내용	① 폭력행위의 제지, 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② 피해자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인도 →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③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④ 폭력행위의 재발시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임시조치의 내용	①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②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m 이내 접근 금지 ③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④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의 위탁(법원의 직권) ⑤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13. ④

[해설]

- ㉠(도로교통법 제51조), ㉡(도로교통법 제52조), ㉢(도로교통법 제53조), ㉣(도로교통법 제53조의 3) 모두 다 옳은 내용이다.

14. ②

[해설]

- ②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

15. ③

[해설]

- ㉠, ㉡, ㉣은 경찰장구에, ㉢은 분사기·최루탄 등에, ㉤, ㉥은 무기에, ㉦, ㉧은 기타장비에 해당한다.
 [경찰장비의 종류]

경찰 장비 종류	① 경찰장구: 수갑·포승(포승)·호송용포승·경찰봉·호신용경봉·전자충격기·방패 및 전자방패 ② 무기: 권총·소총·기관총(기관단총을 포함)·산탄총·유탄발사기·박격포·3인치포·함포·크레모아·수류탄·폭약류 및 도검 ③ 분사기·최루탄등: 근접분사기·가스분사기·가스발사총(고무탄 발사검용을 포함) 및 최루탄(그 발사장치를 포함) ④ 기타장비: 가스차·살수차·특수진압차·물포·석궁·다목적발사기 및 도주차량차단장비(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	---

16. ②

[해설]

[통합방위사태]

갑종사태	일정한 조직체계를 갖춘 적의 대규모 병력 침투 또는 대량살상무기 공격 등의 도발로 인한 비상사태로서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 군사령관의 지휘·통제하에 통합방위 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
을종사태	일부 또는 수개지역에서 적의 침투·도발로 인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회복이 어려워 지역 군사령관의 지휘·통제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
병종사태	적의 침투·도발위협이 예상되거나 소규모(5명 이내)의 적이 침투 한 때에 지방경찰청장·지역 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의 지휘·통제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될 수 있는 사태를 말한다. → 경찰의 책임구역 내에서는 경찰이 독자적으로 작전수행이 가능하다.

17. ④

[해설]

㉠- 4년, ㉡- 2년, ㉢- 즉시에 해당한다.

[운전면허 발급 제한기간]

즉시 응시	①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②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적성검사에 불합격되어 다시 제2종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
6월	① 무면허운전(운전면허정기 기간 중 운전은 취소된 날로부터)·운전면허발급 제한기간 중에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의 선고를 받은 사람]한 자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위반한 날로부터 ② 1년의 운전면허 발급제한사유(공동 위험행위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위반한 날로부터 1년) 등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 된 자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1년	2~5년의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① 공동 위험행위의 금지규정을 위반한 자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및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위반한 날로부터 ② 공동 위험행위의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및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취소된 날로부터 ③ 누적벌점의 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 ④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 ⑤ 교통사고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는 제외) ⑥ 무면허운전(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 중 운전) 금지규정 또는 운전면허발급 제한기간 중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자동차 등 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의 선고를 받은 사람] 그 위반한 날로부터 ⑦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간 등의 범죄행위를 한 때[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의 선고를 받은 사람]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2년	① 음주운전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하여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로부터

	②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요구에 3회 이상 불응하여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로부터 ③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경우 운전면허 취소된 날로부터 ④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때 운전면허 취소된 날로부터 ⑤ 운전면허 효력정지 기간 중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드러난 때 운전면허 취소된 날로부터 ⑥ 무면허운전(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 중 운전) 금지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의 선고를 받은 사람] 그 위반한 날로부터 ⑦ 운전면허발급제한기간 중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자동차 등 운전금지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의 선고를 받은 사람] 그 위반한 날로부터 ⑧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절도(훔치기)나 강도(빼앗은) 한 자가 운전면허로 운전한 경우[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의 선고를 받은 사람] 운전면허 취소된 날로부터 ⑨ 운전면허시험에 대신 응시한 자 운전면허 취소된 날로부터 ⑩ 공동 위험행위의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여 각각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운전면허 취소된 날로부터
3년	① 음주운전을 하다가 3회 이상 교통사고를 야기한 자[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의 선고를 받은 사람] 운전면허 취소된 날로부터 ②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범죄(형법상 살인, 사체유기, 방화, 강도, 강간, 강제추행, 약취·유인, 감금, 상습절도, 단체·다수의 교통방해)를 한 경우[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의 선고를 받은 사람] 그 위반한 날로부터 ③ 타인의 자동차를 강·절도한 자가 무면허로 운전한 경우[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의 선고를 받은 사람] 그 위반한 날로부터
4년	5년의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에 도주한 경우[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의 선고를 받은 사람] 운전면허 취소된 날로부터
5년	① 무면허 운전(면허정지 기간 중 운전)·운전면허발급제한기간 중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자동차 등 운전 중 사람을 사상한 후 구호조치 및 신고 없이 도주한 경우[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의 선고를 받은 사람] 그 위반한 날로부터 ② 음주운전·약물복용·과로운전(질병, 약물 복용), 공동위험행위운전 중에 사람을 사상한 후 구호조치 및 신고 없이 도주한 경우[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의 선고를 받은 사람] 운전면허 취소된 날로부터

18. ③
[해설]

㉠ 옥외집회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말한다.

19. ④
[해설]

㉠(보안관찰법 제3조), ㉡(보안관찰법 제5조), ㉢(보안관찰법 제6조), ㉣(보안관찰법 제8조 제3항), ㉤(보안관찰법 제8조 제4항) 모두 다 옳은 내용이다.

20. ②
[해설]

[범죄인 인도의 원칙]

상호주의의 원칙	우리나라와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하는 국가가 동종의 인도범죄에 대한 대한민국의 범죄인 인도청구에 응한다는 보장이 있는 경우에는 범죄인인도법을 적용한다는 원칙(범죄인인도법 제4조)
----------	--

쌍방 가벌성의 원칙	의의	범죄가 청구국과 피청구국의 쌍방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지 않는다는 원칙(동법 제6조)
	최소한 중요성의 원칙	① 경미한 범죄까지 인도대상으로 삼으면 낭비이므로 최소한의 중요성은 있어야 한다는 원칙 ②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의하여 인도범죄가 사형·무기·장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범죄인 인도 가능(동법 제6조)
특정성의 원칙		인도된 범죄인이 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의 범죄로 처벌받지 아니하고 제3국에 인도되지 아니한다는 원칙(동법 제10조)
자국민 불인도의 원칙		① 자국민은 청구국에 인도하지 않는다는 원칙 → 임의적 인도거절사유 ②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채택되고 있으나,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채택되지 않고 있다. → 우리나라는 채택하고 있다(동법 제9조).
유용성의 원칙		① 범죄인의 인도는 실제로 처벌하기 위한 것이므로 범죄인 인도가 처벌목적에 유용해야 한다는 원칙 ②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의하여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할 필요가 없다(동법 제7조).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	의의	① 인도범죄가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이거나 그와 관련된 범죄인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지 않는다는 원칙(동법 제8조) ② 범죄인인도법에서는 정치범의 개념정의는 하지 않고 예외적 인도 조항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치범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적으로 피청구국의 판단에 의존하고 있다.
	예외	다음의 범죄는 인도의 대상에 해당 ① 국가수반·정부수반 또는 그 가족의 생명·신체를 침해하거나 위협하는 범죄 ② 다자간 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범죄인에 대한 재판권을 가지거나 범죄인의 인도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범죄 ③ 다수인의 생명·신체를 침해·위협하거나 이에 대한 위협을 야기하는 범죄 ④ 기타 국가원수암살, 항공기불법납치, 집단학살, 해적행위, 야만·약탈범, 마약거래, 전쟁범죄, 위조, 인종차별, 고문 등
군사범 불인도의 원칙		① 군사적 의무관계에 기인하는 군사범죄, 즉 탈영·항명 등의 범죄자는 인도하지 않는다는 원칙 → 군대 내 범죄라 할지라도 일반범죄의 성격도 동시에 갖고 있는 직권남용, 가혹행위, 절도와 같은 범죄는 인도대상에 해당 ② 우리나라는 남북한 대치상황으로 인하여 군사범 불인도의 원칙에 대한 명문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